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미 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15.10.7)에 따라, 구미(경북)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기기' 분야의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이 집적화된 대-중소기업 공동협력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인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

- 인동119안전센터 출입통로가 협소하고 일반차량의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출동지연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인동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고,
- 향후 진미동 주민센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119안전센터 부지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 위 치 : 구미시 신평동 188-3번지 외 4필지
- 대 상 : 토지 2,753㎡(832평)
건물 지상5층 지하1층/연면적 5,074㎡(1,535평)
- 기준가격 : 15,840백만원
 - 토지 1,240백만원(공시지가)
 - 건물 14,600백만원(건축비) (도비 4,830 시비 9,770)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주요시설
 - 전략제품별 연구개발·테스트베드,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 교육실
 - 기업연구개발·테스트실, 연구소 입주공간 등

☐ 인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

- 위 치 : 구미시 진평동 985-36번지 외 7필지
- 대 상 : 토지 401㎡(121.3평)
- 기준가격 : 376백만원(공시지가)
- 사업기간 : 2017년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구 분			건수	수량(m ²)	금액(백만원)
취득	계		14건	8,228	16,216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3건	3,154	1,616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5,074	14,600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액 (백만원)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m²)					
계			8,228	16,216				
취득	건물	신평동 188-3번지 의 4필지	5,074	14,600	2017년	스마트밸리 지원센터신축	구미시	신축
	토지	신평동 188-3	1,142	767	2016년	"	국 (기획재정부)	
	"	신평동 205-3	422	124	"	"	"	
	"	신평동 473-24	43	13	"	"	"	
	"	신평동 산29-2	1,024	300	"	"	"	
	"	신평동 산21-23	122	36	"	"	"	
	"	진평동 1021-14	87	31	2017년	안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	
	"	진평동 1021-24	7	10	"	"	"	
	"	진평동 1021-23	7	3	"	"	"	
	"	진평동 1021-13	119	165	"	"	"	
	"	진평동 985-36	78	28	"	"	"	
	"	진평동 985-52	4	1	"	"	"	
	"	진평동 985-51	12	17	"	"	"	
	"	진평동 985-38	87	121	"	"	"	
계								
처분								

위 치 도

□ 경북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신축부지

○ 소재지 : 구미시 신평동 188-3번지 외 4필지



☐ **인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

○ 소재지 : 구미시 진평동 985-36번지 외 7필지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